

개정 전	개정 후
<p><u><신 설></u></p>	<p>2. 사업주체로부터 최초로 유상거래 <u>(부담부증여는 제외한다)로 취득</u> <u>(법인·단체가 취득하는 경우는 제외한다)하는 아파트로서 실제 입주</u> <u>한 기간(제1항제4호에 따른 임대차</u> <u>계약의 임차인이 입주한 기간은</u> <u>제외한다)이 1년 미만인 아파트일</u> <u>것</u></p> <p>3. 수도권 외의 지역에 있을 것</p> <p>4. 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이고 <u>「지방세법」 제10조의3에 따른</u> <u>취득 당시의 가액이 6억원 이하일</u> <u>것</u></p> <p>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4항에 따라 취득세를 경감하는 경우 해당 지역의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25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율을 추가로 경감할 수 있다.</p>

■ 법률 부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 다만,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호에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.

- 제33조의3제4항·제5항, 제34조제8항·제9항 및 제177조의2제1항제2호의 개정 규정: 공포한 날

제2조(지방세 감면에 관한 적용례)

- 제33조의3제4항·제5항 및 제34조제8항·제9항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.